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장)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개요

임용직위	임용직급	인원	임용 기간	담당업무
일산동구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일산서구 보건소장		1명		

2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다.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라.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임용(계약) 기간

- 가.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 나. 임용일은 2027. 1. 1.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임용 신분

- 가.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나. **(민간인의 경우)** 민간인의 경우 임용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5 보수 수준

- 가.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나. **(민간인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에 규정된 아래의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130% 범위 내에서 결정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4호 (4급 상당)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0,490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가족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매년 정기평가를 진행하여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예정

[외부 응시자 참고사항]

-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재채용 시 해당 연금 전부 지급 정지

가.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1) 거주지 · 성별 : 제한 없음
- 2)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3)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역법」 제76조 등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요건

1)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 비례 계산)

※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2) 직위별 세부 요건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참고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일산동구 · 일산서구보건소장		
구 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학과)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관련학과)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필수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p> <p>■ 관련학과 및 관련분야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p>		

***[경력기준 중 민간경력 참고사항]**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근무경력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 경력 인정 불가)

7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가. 시험일정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일
		일시	장소	
2026. 11. 9.(월) ~ 11. 13.(금) [5일간]	2026. 12. 7.(월) 전·후	2026. 12. 예정	미정	2026. 12.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 안내 하지 않음 ※ 고양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고 → 채용공고(합격자공고란)에서 공고문 확인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나. 접수방법

- 1) 접수기간 : 2026. 11. 9.(월) ~ 11. 13.(금) [5일간]
- 2) 접 수 처 : 고양시청 본관 4층,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등기우편

※ 주소 :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4층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방문접수】

- 평일 9:00~18:00 접수(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 시청 신관 1층(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응시수수료 1만원)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하여 제출
- 대리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및 방문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 후 익일 오후 확인 전화 필수(☎031-8075-2376)]

- 가급적 빠른 등기로 송부 권장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택배, 퀵서비스 불가
- 응시수수료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구매, 1만원)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가
-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 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재공고) 응시원서” 문구 표기

다. 시험방법

1) 1차 서류심사 : 형식요건 심사

-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를 통해 필요한 능력요건 검증

[PPT(프레젠테이션) 발표] 총 10분 이내

- 고양시 관련 주제 선정 후 본인의 직무수행계획과 연계하여 발표

[평정요소]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8

제출서류 ※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단면인쇄

[제출서류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원서 접수 기간 내 제출)
- 외국어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제1호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제2호서식]

[응시수수료(10,000원) 관련 안내사항]

- (방문접수)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고양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에 부착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하여 발송
 -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 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 수입증지 미부착 및 우편통상환 미동봉 응시원서는 접수가 불가함

- ③ 이력서 1부 [제3호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재 금지)
- ④ 자기소개서 1부 [제4호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제5호서식]
- ⑥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1부 [제6호서식]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 각 1부 [제7호서식]
- 동의 시 주민등록번호 작성 필수(미동의 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제8호서식]
-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제9호서식]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본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 단위 근무시간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주 단위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회사 자체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업무분장표 등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첨부 제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 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로 ‘임용 예정 직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⑪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전문학사 이상 전체)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⑫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제10호서식]

- 학력기준 응시자 중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성 및 제출

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⑭ 프레젠테이션 발표 파일(PPT)

- 원서접수 기간 내 메일 송부(choijs1@korea.kr)

9 기타사항

가. 고양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로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 서류는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바.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받지 않습니다.

사. 분야별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서류 기재착오, 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031-8075-23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 2026년도 제2회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재공고)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응시직급

□ 제출목록

연번	제출목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6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7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동의 시 주민등록번호 작성) ▶별지 제7호서식	
8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11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전문학사 이상 전체)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1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10호서식	
1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4	프레젠테이션 발표 파일(PPT) ▶메일제출 (choijs1@korea.kr)	
15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자에 한함)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6년 양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재공고)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직급		전자우편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수수료 10,000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 choijs1@korea.kr
▶연락처 : ☎031-8075-2376

응시표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재공고)

※응시번호		응시분야	
전자우편		응시직급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은 응시자가 책임집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 시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 응시번호」, 「보완사항」: 기재하지 않음 (그 외 항목은 모두 기재)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중복지원 불가)
(일산동구보건소장/일산서구보건소장)
3.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4.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는 취득국적명을 기재, 아닐 시 “해당 없음” 작성
7. 고양시수입증지 : 고양시청 신관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 수수료 1만원 납부
(수입증지 부착 후 제출)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 비용(1만원)만큼 우체국에서
우편 통상환을 구입하여 등기우편에 동봉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사용 불가)**

※ 아래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제출 시 해당 증명서 첨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중복지원 불가)

(일산동구보건소장/일산서구보건소장)

3.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 순으로 기재(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 학위종류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등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전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전공분야 기재

4.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최근경력이 상위에 오도록 작성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근무, '주 40시간 근무'가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근무시간에는 주 ○○시간 기재

5. 자격증 : 응시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여 기재

6. 서명은 자필로 할 것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요령 (제출 시 해당부분 삭제)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글자체】한컴산뜻돋움 / 【글자크기】 13포인트 / 【글자색】 검정색 / 【줄간격】160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②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은 자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재공고)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령을 확인하였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비위면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제한) 공직선거법 상 죄, 정치자금법 상 죄를 범함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그 외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2. 관련내용

- 위 관련규정(공무원 결격사유)을 확인하였습니다. ()
- 위 관련규정(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재공고)』 자격 기준과 관련 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확인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검증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고양시인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관기간

- 임용시험 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이후 응시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련법에 따라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시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고양시 및 고양시인사위원회
이용사무(이용목적)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장애인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
유
인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시자격기준에 “○” 표기(중복 표기 가능)

일산동구 · 일산서구보건소장		
구 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학과)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관련학과)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필수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 관련학과 및 관련분야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근무형태	전일제 / 시간제
퇴사일자	년 월 일				주 근무시간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직급(직위)	비고
~		※ 임용분야 관련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발 급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필수)

직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위 기재사항은 자체서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자, 문의전화번호 필수)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함)

→ 미표기 시 재직기간(경력기간) 산정 불가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할 수 있음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학력	대학교(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상기인은 본 대학교(원)의 _____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고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_____ 분야의 관련학과와 동일계통
학과임을 확인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부서	
	성명	(인)
	연락처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대학원장)(직인)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